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407호
2. 발 의 자 : 김수규 의원
3. 발의일자 : 2019. 2. 1.
4. 회부일자 : 2019. 2. 7.

## II.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 소속 각종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

## III.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2.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3.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4.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3조).
5.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5조).

#### IV.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해당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김수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407호로 발의되어 2019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 위축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등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는 모두 87개에 이르며, 이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51개, 조례 및 교육규칙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36개입니다.

#### [표-1] 서울시교육청 연도별 위원회 현황

(기준일: 2018.9월)

구 분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위원회수	70	83	87	89	<b>87</b>
증 감	4	13	4	2	<b>△2</b>

**[표-2] 법령·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 현황**

(기준일: 2018.9월)

구 분	위원회 수	법령	조례	교육규칙 등	비고
2018년	87개	51개	33개	3개	

- 그동안 위원회는 교육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을 적극 참여시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 그러나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있어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단발성 안건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행정 내부에서 결정·집행 가능한 업무까지도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운영함으로써 정책결정 지연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책 결정의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87개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은 740명이며 이 중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총 62명으로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고 있으며, 회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기능이 대부분 소멸된 위원회도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상위 법령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3] 위원회 위촉직 위원 현황**

(단위: 명)

연도	총계	당연·임명직	위 촉 직							
			소 계	학 계	전문가	민간기업	시민 사회단체	시의원	공공기관 (중앙부처 등)	기 타 (시민, 학부모 등)
2018년	1,027	287	740	164	324	35	101	26	34	56

**[표-4] 위촉직 위원 중 2개 이상 위원회 참여 현황**

(단위: 명)

연도	중복수					
	총계	2개	3개	4개	5개 이상	비고
2018년	62	52	9	0	1	

**[표-3] 개최 횟수별 위원회 현황**

(기준일: 2018.9월)

연도	미개최	연 1회	연 2회	연 3회	연 4회 이상	계	비고
2018년	26	25	13	6	17	87	
2017년	10	17	24	9	27	87	

- 이런 면에서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적용범위, 설치요건 및 절차, 구성, 위원의 공모, 회의 운영,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부터 제16조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 중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절차로 신설 위원회의 경우 설치 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게 하고, 협의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존속기한 등을 검토·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동 조례에서는 위원회 설치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단발성 안전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위원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활동은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사항을 자문, 심의, 협의, 의결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위원회의 공무와 관련하여 출장, 연수 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안 제15조2항에서는 “공무로 여행할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연수, 여행 등을 계획·운영할 경우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근거로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연수·여행 등이 추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03, 2019. 2.15.)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현황

(기준일: 2018.9월)

연번	담당부서	위원회명	설치근거
1	대변인	홍보물 영상물및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2	감사관	감사자문위원회	법령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5조3항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서울시교육청감사자문위원회운영규정
3	감사관	공익제보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4	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	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및제21조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5	감사관	교육행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교육감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규정
6	총무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5조
7	총무과	공적심사위원회	조례 지방공무원법제79조 상훈법시행령제2조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제10조
8	총무과	기록물평가심의회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9	총무과	민원조정위원회	법령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4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
10	총무과	보안심사위원회	법령 -보안업무규정제26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47조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제5조
11	총무과	정보공개심의회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2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정보공개조례제16조
12	총무과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법령 -지방공무원법제7조,제9조,제9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의2
13	총무과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
14	정책안전기획관	교육안전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15조
15	정책안전기획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16	예산담당관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법령 -지방재정법제33조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17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법령 -지방재정법제48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청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2조
18	예산담당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법령 -지방재정법제60조 -서울특별시교육청재정투자심사위원회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19	예산담당관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법령 -지방재정법제37조의2 -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 -서울특별시교육청재정투자심사위원회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20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 -지방재정법시행령제46조 -서울특별시교육청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제12조
21	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법령 -지방재정법제32조의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2조
22	행정관리담당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법령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서울특별시교육청규제완화위원회규정제3조
23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13조
24	행정관리담당관	법제심의위원회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5	행정관리담당관	제안심사위원회	법령 -지방공무원법제78조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제7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제안규칙제13조
26	행정관리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법령 -행정심판법 제6조
27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2조
28	참여협력담당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	조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9	참여협력담당관	학교협동조합민관협의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
30	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31	노사협력담당관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조례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32	노사협력담당관	생활임금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33	교육혁신과	과학교육자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34	교육혁신과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35	교육혁신과	서울특별시혁신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36	교육혁신과	영재교육진흥위원회	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의3, 제4조의4
37	교육혁신과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	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05조의4 서울특별시교육청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제2조
38	교육혁신과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39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위원회	법령	·유아교육법 제5조
40	초등교육과	교원능력개발평가평가관리위원회	법령	·교원능력개발평가실시에관한훈령제3장 서울특별시교원능력개발평가실시및운영에관한규칙제8조
41	초등교육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제3조의2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27조
42	초등교육과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43	초등교육과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9조
44	초등교육과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45	중등교육과	교권보호위원회	법령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46	중등교육과	교원양성위원회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47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법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3조
48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법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2조
49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법령	·교육공무원법제49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50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법령	·국가공무원법제81조 ·교육공무원징계령제2조~제4조
51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위원회	교육부고시	·초·중등학교교육과정(교육부고시2015-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과정위원회규칙
52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정상화심사위원회	법령	·공교육정상화추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제12조 ·공교육정상화추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2조
53	중등교육과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54	중등교육과	장애인교원채용심사위원회	교육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 심사위원회 규칙
55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56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법령	·학교도서관진흥법제9조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4조
57	민주시민교육과	학력심사위원회	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의2
58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3조
59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60	평생교육과	문해교육심사위원회	법령	·평생교육법시행령제76조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문해교육프로그램설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제5조
61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9조
62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63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64	진로직업교육과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65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의2 ·서울특별시교육청특성화고등학교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
66	체육건강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67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위원회	법령	·학교급식법제5조 ·학교급식법시행령제5조제6조
68	체육건강과	학교보건위원회	법령	·학교보건법제17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4조제25조
69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5항
70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법령	·학교체육진흥법제16조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조례
71	학교지원과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9조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72	학교지원과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4조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73	학교지원과	교명제정심사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4조
74	학교지원과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법령	·대안학교의설립 운영에관한규정제5조 ·서울특별시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75	학교지원과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76	학교지원과	특성화중학교지정운영위원회	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의2 ·서울특별시교육청특성화중학교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제3조
77	학교지원과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 ·서울특별시교육청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
78	학교지원과	학교신설이전전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79	교육재정과	계약심의위원회	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2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06조 ·서울특별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80	교육재정과	공유재산심의회	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6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2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5조
81	교육재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신청사및연수원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조례 제5조
82	교육시설안전과	개축심의위원회	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34조 ·교육부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정관리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구성·운영규정
83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84	교육시설안전과	기술자문위원회	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서울특별시교육청기술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85	교육시설안전과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34조 ·교육부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정관리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구성·운영규정
8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87	교육정보화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1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